

재정경제부 제2001-9호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등에 관한 고시

불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1년 5월 24일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제1조(목적) 특별소비세법(법률 제6294호, 2000.

12. 29공포) 및 교통세법(법률 제6295호, 2000.
12. 29공포)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
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
(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수입업자
(이하 “석유수입업자”라 한다.)
3.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을 다음과 같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나목, 다목, 라
목, 바목 및 아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4조(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의 매 점매석 등 금지)

- ① 석유정제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반출하는 제
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전년 동기간 반출량

의 115%(중유는 120%)를 초과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석유수입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통관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전년 동기간과 당해년도 직전 2개월(3월 및 4월)간 수입물량을 비교하여 많은 것의 115%(중유는 120%, LPG중 부탄은 140%)를 초과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등 금지)

① 석유판매업자는 매년 5월 및 6월에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석유판매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신고센타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수입물량 보고)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는 이 고시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매년 5월과 6월중에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을 해당월의 말일로부터 15일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9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